
 <b>국토교통부</b>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
	배포 일시	2015. 8. 26(수) 총 1매(본문 1)	
담당 부서 건설경제과	담당부서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정수호, 주무관 이달수 • ☎ (044)201-3507, 3508	
보도 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'담합 건설사 사면은 대기업 구하기' 보도 관련

- 광복 70주년 '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'는  
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각종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 
 사면 혜택을 받는 건설업체의 대부분(90%이상)은 중소 건설업체임

< 건설행상 행정처분 해제 기업 구분 >

구분	처분 건수	업체수
대기업	60 (6.3%)	23 (3.3%)
중소기업	896 (93.7%)	667 (96.7%)

\*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한정    \*\* 7월말 기준 가집계 결과

- 금번 특별사면 대상은 '건설분야'의 입찰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 
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제의 경우에 한하여 '시설공사' 계약으로  
 한정된 것임

\* '00년 이후 해제조치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

< 보도내용 (한국일보, 8.26.자) >

<p>○ 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은 대기업 구하기</p> <p>- 사면대상을 '시설공사계약'으로 한정하여 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가하는          '물품계약'은 사면대상에서 빠져 대기업 위주로 사면 혜택</p>
---